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조합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2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산’)가 조합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u>중앙회</u> ,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 ----- ----- 1. <u>조합, 중앙회</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자산은 농협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¹⁾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추심, 부실자산 개발·임대관리,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

1)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농협자산관리회사 현황]

구분	세부현황
설립	2002.8.1. (조합:중앙회 3:7 공동출자)
주요사업	부실자산 매입, 부실자산 보전·추심 등
조직현황('26.2월)	5부 1실, 12개 지사 / 직원 163명(본사 56명, 지사무소 107명)
재무현황('26.2월)	자산 5.15조원 / 부채 5조원 / 자본 0.15조원 / 당기순이익 109억원

자료: 농협자산관리회사 제출자료 재구성

현행법은 농자산의 부실자산 매입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①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운용수익 등 수익금, ③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한정하고 있음.²⁾

‘26년 1월 기준 농자산의 차입금은 4.8조원으로, 차입처별 차입규모를 살펴보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³⁾ 2조원,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⁴⁾ 1.5조원, 농협은행 1.3조원 가량이며, 평균 차입금리는 약 4.1%임.

2)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제11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이하 생략>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상호금융사업 수행 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상호금융사업규정(내부규정)」에 의해 중앙회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회계임.

[차입금 현황('26.1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차입기관	약정금액(a)	차입잔액(b)	잔여한도(a-b)	평균금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0,000	19,650	350	3.97
상호금융특별회계	18,700	15,500	3,200	4.20
농협은행	13,200	13,000	200	4.20
합 계(평균)	51,900	48,150	3,750	4.11

자료: 농협자산관리회사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 등의 영향으로⁵⁾ 농축협 연체율이 '22년 1.21%에서 '25년 4.61%로, 연체금액은 4조원대에서 17조원대로 최근 3~4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농자산의 부실채권 매입물량도 '22년 0.7조원에서 '25년 3조원대로 4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같은 기간 부실채권 평가물량이 약 1.9조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평가물량 대비 실제 매입 비율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임.

[농축협 연체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농축협	연체율	1.21	2.73	4.03	4.61
	연체금액	40,819	94,688	143,466	171,606
자산관리	평가물량	18,979	51,970	99,513	122,297
	매입물량	7,239	12,074	22,329	30,974

자료: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에 개정안은 채권 매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하여 법률상 농자산의 운영자금 차입처에 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⁶⁾

5)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자료집] 농협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2025.3.18.

을 추가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그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이를 매각하여 조직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함.⁷⁾

이에 개정안에 따라 농자산의 운용 자금 차입처가 다변화되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신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새마을금고의 경우 '25.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였는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뿐 아니라 단위 금고로부터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자산은 현행법⁸⁾상으로도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추가 차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 농자산에 대한 위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처를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제약을 해소하기보다는 위험을 조합에 전가하여 분담하는 것에 그칠 수 있음.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7)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기자본/위험자산을 의미하는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예방하고, 담보가 하락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8)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둘째, 조합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음.

즉, 자산의 부실채권 회수·관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개별 조합으로 손실 부담이 이전될 수 있고, 농자산의 매입 여력이 확대되는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유인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음.

관련하여 농자산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차입 확대에 따라 영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22년 대비 '25년 자본 규모는 16% 증가한 반면, 부채는 약 4.6배 증가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⁹⁾

[농협자산관리회사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자 산	12,072	19,399	35,576	51,478
자 본	1,267	1,319	1,370	1,470
자본금	99	99	99	99
부 채	10,805	18,080	34,206	50,028
영업수익	1,904	2,232	2,536	4,116
이자비용	243	557	1,053	1,509
영업이익	173	119	122	128
당기순이익	219	112	105	109

주: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채권처분원가 및 이자비용 등 판관비)을 제외하여 산출
'22년도 당기순이익에는 NH김해I&D(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 101억원 포함
자료: 농협자산관리회사

9) 이에 대해 농자산은 내규에 의해 차입금에 대한 신규·추가 약정을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을 매입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자산의 조합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가 부실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농자산과 조합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농협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 지연으로 인한 농축협 전반의 경영 안정성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므로 농자산의 자금조달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